

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[별지 제14호서식] <개정 2023. 9. 5.> 정부24(www.gov.kr)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[] 사망일시금

[] 미지급 보훈급여금 지급 신청서

※ []에는 해당되는 곳에 √ 표시를 하며,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. (앞쪽)

접수번호		접수일		처리기간 1일	
보훈급여금을 지급받던 사람	대상구분		보 훈 번 호		
	성명		생년월일		
	주소 (전화번호: 휴대전화번호:)				
	구분 []사망 []행방불명		신상변동일		
신청인	보훈급여금을 지급받던 사람과의 관계		성명		주민등록번호 -
	주소 (전화번호: 휴대전화번호:)				
	금융기관명		신청인 명의의 계좌번호		
	보훈급여금 미지급기간 년 월부터 년 월까지				

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7조·제18조,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2항·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·제9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지급을 신청합니다.

이	이	이
---	---	---

신청인 (서명 또는 인)

지방보훈청장
보훈지청장 귀하
제주특별자치도지사

신청인 제출서류	뒤쪽 참조	수수료 없음
-------------	-------	--------

210mm×297mm[(백상지(80g/㎡) 또는 중질지(80g/㎡))

신청인 제출서류	1. 사망일시금의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 가.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(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제4조제2항에 따른 신상 변동신고 시 제출하지 않은 경우만 해당합니다) 1통 나. 사망자와 생활을 같이 하고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(신청인이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7조제1항 후단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친족 중 상속인이 될 사람인 경우로서 주민등록표 등본을 통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합니다) 1통 다. 장례를 행한 사람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(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7조제3항에 따른 장례를 행하는 사람만 해당합니다) 1통 2. 미지급 보훈급여금의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 가. 보훈급여금을 받을 사람이 사망한 경우: 제1호가목 및 나목의 서류 나. 보훈급여금을 받을 사람이 1년 이상 계속하여 행방불명인 경우: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(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제4조제2항에 따른 신상 변동신고 시 제출하지 않은 경우로서 주민등록표 등본을 통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합니다) 1통	수수료 없음
담당 공무원 확인사항	1. 주민등록표 등본(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7조제1항 후단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친족 중 상속인이 될 사람이 사망일시금 또는 미지급 보훈급여금의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만 확인합니다) 2. 입금계좌 확인정보(통장 사본)	

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

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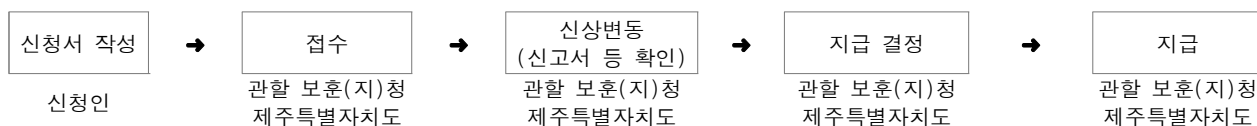
※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.

신청인

(서명 또는 인)

처리절차

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.



확인

담당	주무	과장	(지)청장
----	----	----	-------